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언근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41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8일

발 의 자 : 신언근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장흥순, 진두생, 이혜경, 김제리,
우창운, 김동윤, 김희걸, 주찬식,
문종철 의원(9명)

1. 제안 이유

빈곤아동은 학업중퇴, 자살, 알코올 중독, 비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진로상담 및 교육지원과 빈곤아동의 부모 대상 취업 알선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 (안 제6조제1항제2호).
- 나. 아동의 진로상담 및 교육,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7조제1항제3호,4호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 조치 :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
제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
4.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사업 추진 등)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사업 추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</u></p> <p>4. <u>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</u></p> <p>5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